



EPR 제도 시행에 따른 재활용 기준 및 과태료 안내

About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환경부는 올해부터 “형광등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필름류”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해 11월말까지 형광등과 합성수지 재질포장재 중 필름류의 제조·사용업자 및 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 시행확대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재활용 의무량 산출 기준 및 미이행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

1. 포장재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경우에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브랜드 또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축·수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받침접시·용기 등 기타 포장재”라 함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랩, 뚜껑 등으로

[표 1] 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

(단위 : 톤)

품 목		2002년 총출고량	2004년 의무총량
금속캔		235,250	172,000
유리병		504,827	313,284
종이팩		70,448	20,730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114,660	83,114
	발포폴리스틸렌	19,615	11,063
	폴리스틸렌페이퍼	12,680	2,585
	폴리비닐클로라이드	3,969	1,878
	기타합성수지	단일재질	146,133
복합재질		73,602	20,726

(표 2)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업종	규모
1.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료료품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2.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축·수산물의 판매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3. 폴리스티렌페이퍼(PSP)·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기타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4. 발포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5. 발포합성수지(PSP제외) 재질의 농·축·수산물상자 제조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단순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받침접시, 용기 등을 말하며, 제1호의 음료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제2호의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 용기 등을 제외한다.

“농·축·수산물”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고 밖의 농·축·수산물을 총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한편 “연간수입액”이라 함은 수입항도 착가격(C.I.F)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장재 재활용 의무량 산출기준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전전년도의 총재활용량} + \text{전년도의 재활용 의무총량}) / 2 + (\text{전전년도의 총출고량} - \text{전전년도의 총재활용량}) \times 0.1 \times \text{재활용여건계수}$$

① “재활용여건계수”라 함은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계수로서 계수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로 한다.

② “총출고량”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량 합계를



업계전단

【표 3】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재활용 기준비용
1.음식료품류, 농·축·수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	가. 종이팩	kg당 185원
	나. 유리병	kg당 34원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kg당 87원 kg당 151원
	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1)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폴리스티렌(PS)·폴리스티렌페이퍼(PSP) ·폴리아크릴릭·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등 단일재질의 포장재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단일재질 포장재 (3) 발포폴리스티렌(EPS) 단일재질포장재 (4)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5) 합성수지 복합재질포장재(PVC 복합재질 제외)	kg당 327원 kg당 178원 kg당 317원 kg당 981원 kg당 467원
	2. 전자제품원충재, 농·수·축산물상자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포장재
3. 전지류	가. 수은전지	g당 39.6원
	나. 산화은전지	g당 35.5원
	다. 니켈·카드뮴전지	g당 0.78원
	라. 리튬전지(1차 전지에 한한다)	g당 0.8원
4. 타이어	타이어	kg당 30원
5. 윤활유	윤활유	l 당 20원

말하며,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한다.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0.7을 곱하여 산정한 양이다.

③ “전전년도”라 함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2년전 연도를 말한다.

“전년도”라 함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의 전년도가 적용된다.

④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최초년도의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총재활용량”을 “전년도의 재활용의무총량”으로 본다.

⑤ 제18조제6호의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연도의 추정발생량을 “전전년도의 총출고량”으로 본다.

[표 4] 재활용의무량 미이행율별 가산금액(제28조 제1항관련)

재활용의무량 미이행율(%)	5% 이하	5% 초과 15% 초과	15% 이하 30% 초과	30% 이하
가산금액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 의무량중 재활용되지아니한 수량 × 15/100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아니한 수량 × 20/100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아니한 수량 × 25/100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아니한 수량 × 30/100

산출된 재활용의무총량이 전전년도 총출고량의 90퍼센트(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에는 90퍼센트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총출고량의 90퍼센트(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에는 90퍼센트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총량으로 한다.

여기서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재활용 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인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당해 연도에 재활용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산출된 재활용의무총량을 감경할 수 있다.

3.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을 [표 3]에 나타내었다.

유리병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과 금속캔의 경우 뚜껑 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기준비용이 [표 2]의 2배가 적용된다.

포장재의 중량은 뚜껑, 마개 등 부분품의 재

질과 관계없이 부분품의 중량을 포함한 전체 중량으로 한다.

“복합재질포장재”는 합성수지재질을 2이상 복합하여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와 여타의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첩합된 경우에 한함)을 첩합, 코팅 등의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한 포장재를 말한다.

4. 재활용의무량 가산금액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비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활용의무량 미이행율별 가산금액은 [표 4]의 내용과 같다. [ko]